자동차 운전면허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운전면허!
이 콘텐츠에서는 운전면허 취득방법,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가능차량,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구제방법, 운전면허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시기 등 운전면허에 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
1.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4
1.1.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4
1.1.1.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4
1.1.2.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8
1.1.3.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10
2. 운전면허 취득하기 14
2.1. 운전면허시험 도전! 14
2.1.1.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4
2.1.2.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
2.2. 운전면허 취득절차 21
2.2.1. 운전면허시험응시 21
2.2.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29
3. 운전면허 유지하기 31
3.1. 운전면허증 관리 31
3.1.1.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31
3.2.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33
3.2.1.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3
3.2.2.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36
3.2.3. 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38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42
4.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42
4.1.1. 벌점을 받았습니다. 42
4.1.2.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44
4.1.3.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49
4.1.4.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4
4.2.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56
4.2.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56

1.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1.1.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1.1.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취득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

특수차량 운전하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 택시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택시운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참조).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운반차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주)].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Q. 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2-0374, 2012.7.27. 회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1.1.2.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호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납부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

> ※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8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

▪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자국면허로 교환해 주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8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비엔나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2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몰디브
미주(8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쿠바, 페루
유럽(4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29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본문).

▪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한 자동차(렌터카를 말함)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단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제한

외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

▪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는 운전금지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7조).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① 금지기간이 만료되거나 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동일한 위반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취득하기

2.1. 운전면허시험 도전!

2.1.1.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 취득 연령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구분	제한 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위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로부터 운전교육 및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주요사업-운전면허사업-디딤운전면허지원센터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구분	사유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1항·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5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 또는 제4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4)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6호나목, 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과 관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 또는 제45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다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9)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금지기간
(10)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 제외함)	그 부착기간

※ 다만, 위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및 제93조제1항제9호).

2.1.2.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면제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함)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면제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 등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의 <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군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인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대한 목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 외국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의

<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운전면허 취득절차

2.2.1. 운전면허시험응시

면허시험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운전면허 시험-면허시험 안내-면허시험순서>

1.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 위의 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병력(病歷)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 위의 서류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학원·전문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수·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함)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브레이크·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3. 학과시험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1종 보통·제2종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

▪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95%)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의 분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합격기준	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4. 기능시험

▪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참고

▪ 합격자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5. 연습운전면허 취득

▪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 연습운전면허증은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를 붙여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도로주행시험

▪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본문).

▹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단서).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 **자동차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9조).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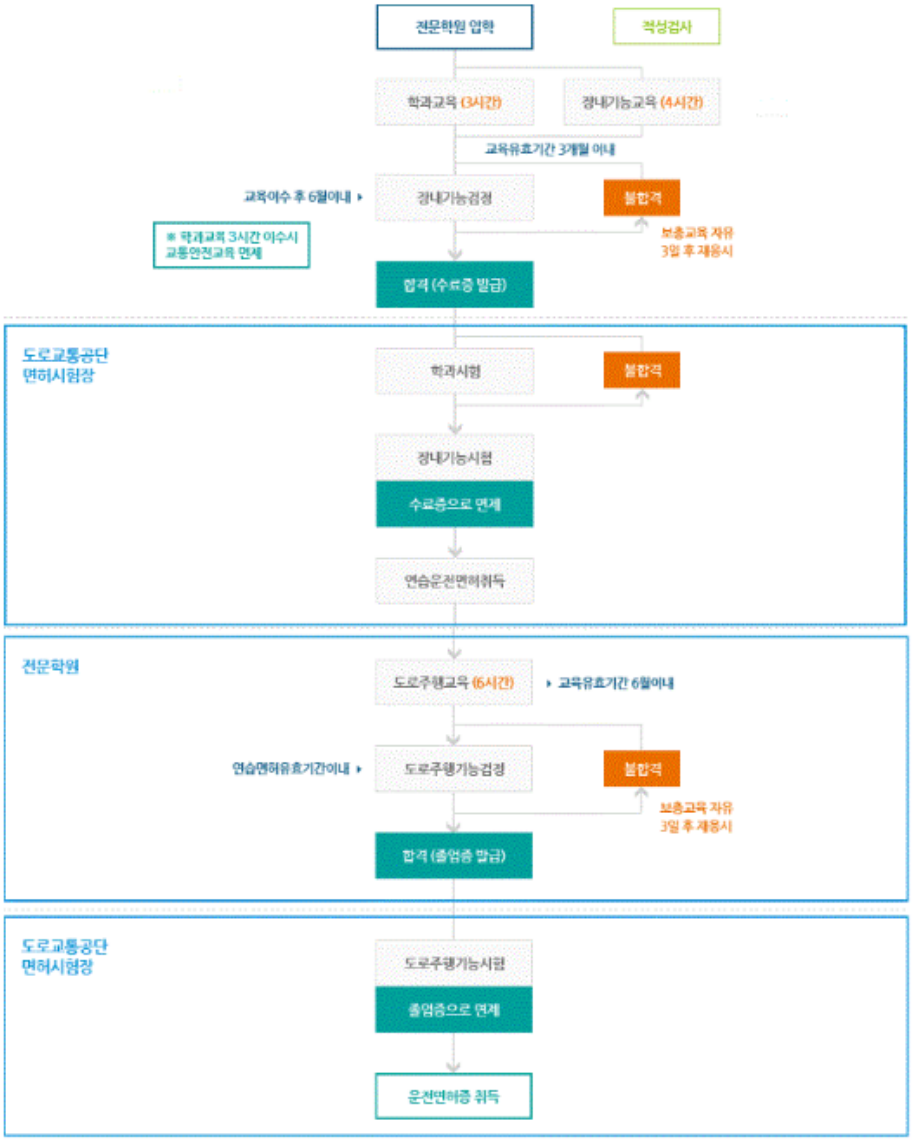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출처: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절차는 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www.driv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제2항).

▪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0조제3항).

▪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11조제1항).

▪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11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①번)

-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환불방법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①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②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③ 교육생의 질병·부상 또는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기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 반환

- 운전교육의 예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과 보강 방법

① 자동차 운전학원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 만큼의 수강료 배상

·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0%를 배상

②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10% 배상

·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20% 배상

·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30% 배상

·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50% 배상

※ 수강자가 교육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가 없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①번 비고).

2.2.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운전면허증 발급받기전 운전금지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운전면허번호가 부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본문).

·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가 유지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단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가능)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1항).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2항).

▪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3항 및 제150조제3호의2).

운전면허의 효력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

3. 운전면허 유지하기

3.1. 운전면허증 관리

3.1.1.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 위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의무

▪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 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운전면허증을 헐어 못쓰게 되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 포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 포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는 경우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의 범칙행위를 하는 경우

▪ 이 경우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일이나 출석일까지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본문).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사유 및 유효기간(「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3.2.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3.2.1.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 최초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제2항)	-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제3호가목 및 바목)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9호, 제160조 제2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7번 참조)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본문).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단서).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가 인정된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

적성검사 연기자의 정기적성검사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참조).

3.2.2.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갱신

이유 및 기간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운전면허갱신 신청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대상자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검사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구비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1매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제2종 수동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함)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에 따라 운전한 경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3 제13호).

※ 7년 무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 운전면허 갱신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수시적성검사 및 대상자

수시적성검사의 이유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자

▪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③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4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⑤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도로교통법」 제89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 절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

▪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등기우편 등으로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단서).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제출

▪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본문).

- 사진 2장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단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

▪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함)의 의견을 들은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여 판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수시적성검사 연기방법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사유

▪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시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본문).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인 경우만 해당)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단서).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시적성검사 연기 후 주의사항

- 수시적성검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8번).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4.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4.1.1. 벌점을 받았습니다.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의 구분

벌점

▪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누산점수

▪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의 종합관리

벌점 누산점수관리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처분벌점의 소멸 및 상계 등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착한마일리지제도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취소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처리절차

▪ 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내 벌점은 얼마일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
>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1.2.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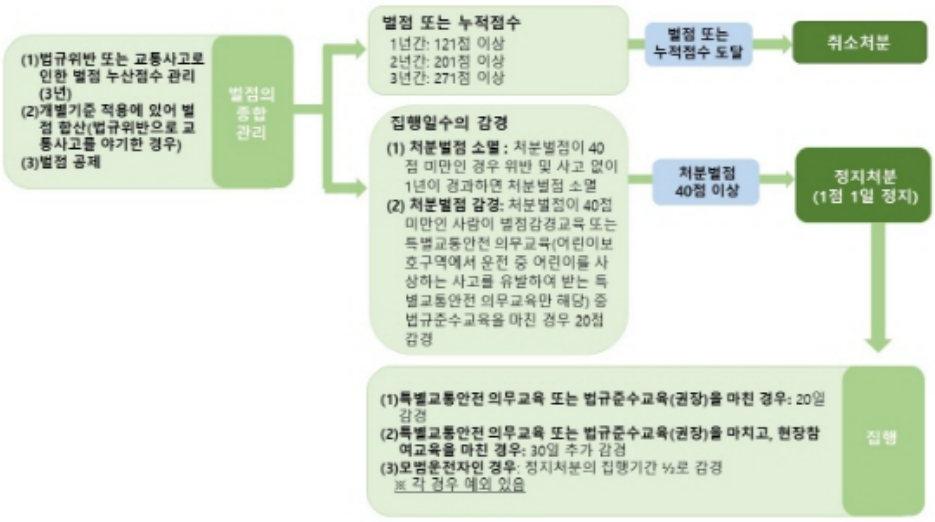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이유

면허정지처분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2)].

정지처분 개별기준

①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함)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의 경우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③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를 한 경우
	30	①·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② 위 ①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 중 법규준수교육을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이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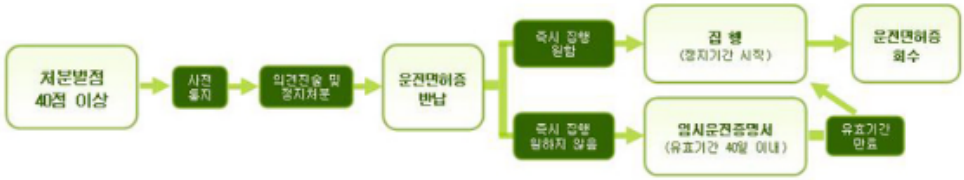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불산입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및 제95조제3항).



처분 전 통지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

운전면허증 반납

▪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 포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증명서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참조].

▪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 임시운전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1)].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제2호)

취소사유	내 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면허증 소지자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면허 취득자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 포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

>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
> -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
>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피해만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4.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자 및 연기

교육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 "초보운전자"란?
>
>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교육의 연기

▪ 위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연기되면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교부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 그 이외의 경우 : 10만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자

교육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 교통법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

교육의 통지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교육의 실시 및 이수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운전교육, 배려운전교육 및 법규준수교육(의무)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법규준수교육(권장), 벌점감경교육, 현장참여교육 및 고령운전교육으로 나뉘어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 교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구체적인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4.2.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4.2.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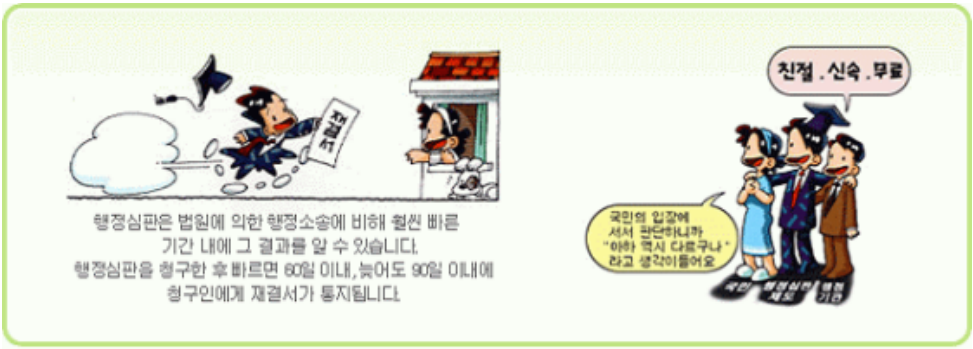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의<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참고하세요.
>
> ※ 그 밖의 행정심판절차 등 행정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이란?

▪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 행정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을 참고하세요.